

#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Invigor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 Focused on Awareness of Fire-fighting Officers Working in Gyeonggi Province –

Jin Chae\*

Gyeonggi Fire Service Academy, 42 Cheonduksan-ro 11-gil, Namsa-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Abstract

Fire-fighting safety service has expanded into prevention of danger and various safety problems people experience in everyday life beyond fire-fighting and first aid. As the number of negligent accidents reported to 119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demand for safety due to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has risen significantly, 119 life safety party has been operated since 2012 to provide safety service. However, for activities of 119 life safety party, there are lots of problems including lack of expertise that members of 119 life safety party have and equipment though satisfaction of citizens with service provided by 119 life safety party is higher than that provided by any other organizations of fire-fighting.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invigorate 119 life safety party based on problems that are drawn by analyzing actual state of 119 life safety pa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ay to invigorate 119 life safety party based on the result of a survey of fire-fighting officers.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are organizational factor, legal-institutional factors and technological factor that may influence invigor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and such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vigor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Utilization of social capital of community, building

---

\* Corresponding author. Tel. +82-10-3766-0857. korea119@gg.go.kr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Feb. 28, 2014 / Revised: Apr. 26, 2014 / Accepted: May. 10, 2014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ecuring support of citizens, cooperation between many organizations, discrimination between emergency call and non-emergency call are proposed as suggestions in terms of policies.

**Key word:** life safety, fire fighting organization, social safety net

### 국문초록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가 화재,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19생활안전대의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다른 소방안전 서비스보다 높지만 생활안전대원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119생활안전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관리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기술적 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은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제언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생활안전, 소방조직, 사회안전망

## I. 서론

소방조직의 업무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소방(消防)”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화재진압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 발달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때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난의 예방과 대비라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었다. 1982년 일부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를 설치하여 구급업무를 실시하였고, 1983년 12월 31일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복잡한 사회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조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1987년 소방서 단위로 인명구조대를 운영해오다가 1988년 8월 1일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등을 중심으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오늘날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 등 국민생활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국민소방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인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재난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조·구급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화재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방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현대조직은 급격한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생존·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전략 모색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채진, 2012).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가 화재,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안전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별, 각 소방서별 상이한 생활안전대의 조직구성으로 조직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생활민원으로 인한 구조대와 구급대의 업무과중과 구조대의 잦은 출동으로 역량이 저하되고 있으며, 긴급한 구조출동에 있어 5분 현장도착률이 저하되고 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다른 소방안전 서비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원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19생활안전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소방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 틀을 구성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19생활안전대 활성화를 위해 조직적 요인, 법적 제도적 요인, 인적요인, 기술적 요인, 협력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생활안전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자 향후 연구방향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119생활안전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119생활안전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119생활안전대의 조직적 측면, 법적 제도적 측면, 인적 측면, 기술적 측면, 협력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119생활안전대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방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조직은 유기체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가운데 자기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소방조직도 초기 단순한 소화(消火)의 기능에서 이제 긴급구조와 재난대응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조직의 위상·기능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등 지원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등 사회적 요인 및 경제적 불안 요인에 따라 가정불화 및 단순가출 등이 증가하면서 이동전화 위치조회 요청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참조).

<표 1> 생활안전관련 활동현황

구분	계	별집제거	갈힘사고	동물조치	안전조치	급배수	고드름 제거	기타안전 조치	소방시설 오작동
합계	972,365	389,459	218,044	214,017	14,980	58,056	3,621	43,712	30,476
2013	280,039	86,681	82,287	47,446	5,031	13,697	1,588	26,559	16,750
2012	240,507	129,500	33,091	47,924	902	11,297	776	14,358	2,659
2011	167,999	69,635	34,701	33,872	2,686	21,629	495	857	4,124
2010	145,624	57,167	34,338	36,908	2,659	9,303	462	1,027	3,760
2009	138,196	46,476	33,627	47,867	3,702	2,130	300	911	3,183

※ 자료: 소방방재청 내부자료.

최근 5년간 구조출동 및 구조인원 건수를 살펴보면 구조출동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구조인원은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별집제거, 동물구조, 이동전화 위치추적 등 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안전사고 예방 성격의 구조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 서비스가 화재 및 구조·구급을 넘어서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소방법의 개정을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소방업무가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소방법은 화재·풍수해·설해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58년 법률 제485호로 제정되었으며 1967년 법률 제1955호로 개정되면서 풍수해 및 설해를 제외하고 화재만을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왔다. 한편, 1983년도 법률 제3675호로 구급대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시 대 테러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19구조대가 창설되고 1989년 법률 제4155호로 119구조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서의 임무는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응급환자의 후송과 재난현장의 구조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대참사 등 잇따른 대형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구난기능의 지휘, 통제권을 소방관서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방조직에서 긴급구조구난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연재난의 인명구조 업무도 소방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재난의 구조구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11년에는 생활안전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를 신설하여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과 자연재난에 따른 급·배수 지원활동 등 서민들의 생활 구석구석 찾아가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의 확대로 인해 화재업무로만 국한되던 소방의 업무가 점차 확장되어 구급과 구조를 거쳐 생활안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표 2> 참조).

<표 2> 소방조직의 업무 확대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분기점	1958년	1983년	1988년	2011년
주요업무	화재	구급	구조	생활안전
내용	화재, 풍수해, 설해를 예방·경계·진압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의료기관 긴급 이송	위급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공통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2. 생활안전의 의의

### 1) 생활안전 서비스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위험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의 산물이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생활주변에서 위협하고 있다(유현정 외, 2011).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국민은 다양한 생활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헌법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송석윤, 2003).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안전에 대한 위협에 집중했던 자유주의적 시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안전보호임무가 강조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주목하지 않았던 생활안전의 문제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헌법적 차원에서도 관심을 끌게 되었다.

둘째,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 대한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4항이 자연재난 뿐 아니라 인적 재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 재난에 대해서만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보호청구권의 도출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처럼(기태근, 2010), 국민의 생활안전권은 자연재난 보다는 인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권이 핵심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성은 헌법 제34조에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어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의무(제34조 제2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제34조 제3항),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제34조 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제34조 제5항),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제34조 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출발은 인간의 안전한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화재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또한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방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현대조직은 급격한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생존·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전략의 모색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화재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구조와 구급서비스도 담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기관이 생활안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문화는 조직전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과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속적인 가치로 개인 및 집단이 안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화를 하고,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실수를 교훈삼아 행동을 수정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보상을 하는 문화를 말한다. 즉, 안전문화는 조직의 모든 계층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안전을 위한 개개인의 책임에 대한 약속, 지속유지를 위한 약속, 안전관련 문제의 논의와 강화,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실수를 기반으로 얻어진 교훈들이 포함된다(Wiegmann, *et. al.*, 2003)

안전문화가 형성되어야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이고, 이러한 안전문화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소방관서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 2) 생활안전의 영역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흩어져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분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생활 안전 위기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나 법 제도 또한 복잡하게 얽혀 체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재은·유현정, 2007).

<표 3> 국민생활안전의 분류

구분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체	
		개인	사회
생활 안전 피해 영향 범위	협소 범위	[개인 생활안전 영역] · 취약계층 안전 · 생활경제 안전 · 생활치안 안전	[사회 생활 안전 영역] · 생활식품 안전 · 생활건강 안전 · 생활용품 안전
	중광 범위	[다중 생활 안전 영역] · 교통 생활 안전 · 직업 생활 안전 · 학교 생활 안전	[공공 생활 안전 영역] · 생활시설 안전 · 생활환경 안전 · 생활기반 안전

※ 자료: 이재은·유현정(2007).

## 3) 소방조직의 생활안전 활동영역

소방조직의 119생활안전서비스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19생활안전서비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 생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의 구조출동 요청 거절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응급 생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119에 접수된 출동 요청 중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한 구조업무는 전문 구조장비 및 인력을 갖춘 ‘119구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요소는 있으나, 처리에 급박성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생활안전 지원 및 위험제거 활동은 ‘119생활안전대’에서 수행하도록 업무수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응급구조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효과적인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소방에서 생활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는 비상급(준긴급 또는 잠재긴급) 생활안전 구조 및 안전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조활동에는 인명구조, 동물구조, 단순응급처치 등이다. 인명구조는 단순구조와 안전조치로 나누는데, 인명구조는 문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이고, 안전조치는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제거, 강풍 등에 의한 피해우려 위험시설 안전조치 등이다. 동물구조는 보호조치와 포획(퇴치)로 나누는데, 보호조치는 유기동물, 천연기념물 및 반려동물 등 보호이고, 포획(퇴치)은 벌집제거 등 피해 우려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이다. 민생지원은 급수·급전, 배수, 생활안전서비스관련 소방안전교육, 기타 등이다. 급수·급전은 긴급 식수(먹는샘물) 공급, 비상전원·조명 공급이고, 배수는 침수지역 배수지원 등이다. 생활안전서비스관련 소방안전교육은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119생활안전서비스 관련 소방안전교육 실시이고, 기타는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등이다 (<표 4> 참조).

<표 4> 소방조직의 생활안전 주요 활동영역

분야	업무유형	내용
구조 활동	이동전화 위치추적	자살 우려 및 연락 두절자 이동전화 위치추적
	단순구조	문개방, 장신구 제거, 좁은 틈 신체고립 등
	안전조치	대형고드름 등 낙하우려 위험물 강풍 등에 의한 간판 및 유리창 등 위험시설
	동물보호	유기동물, 천연기념물 및 반려동물 등 보호
	동물포획	벌집제거 및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 및 퇴치
	단순 응급처치	긴급을 요하지 않는 단순 응급처치
민생 지원	급수급전	긴급 식수(먹는샘물) 공급, 비상전원·조명 공급
	배 수	침수지역 배수지원
	소방안전교육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 119생활안전서비스 관련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 타	오작동 소방시설 처리

※ 자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내부자료.

### 3. 생활안전의 선행연구

#### 1) 생활안전에 관한 선행연구

생활안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민 생활안전관점에서 논의, 소비자생활안전을 위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재은·유현정(2007)은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연구에서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운영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안전 책임 주

체(개인, 사회)와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협소범위, 중·광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비전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한 삶의 구현’을 설정하고 ‘국민생활 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법 제도 및 조직의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배정의 제도화, 부처 간 네트워크 구축, 국민생활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축 및 보급,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문화 형성과 의식 개선으로 두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생활안전관리법의 제정, 국민생활안전의 해 지정, 안전도시 대상 제도 시행, 국민생활안전정보센터의 설립, 대국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의 세 가지 영역, 즉 식·의약품 안전 영역, 교통안전 영역, 학교 안전 영역 각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창길(2011)은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주변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분야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으며, 표준화 단계를 7단계, 즉 1단계 생활안전 분야 표준화를 위한 유형정립, 2단계 유형별 업무관련 용어의 표준화, 3단계 유형별 대책과 행동지침 마련, 4단계 관련기관의 재난관리활동 표준화, 5단계 성과관리체계 구축, 6단계 통합관리방안 모색, 7단계 통합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하였다. 표준화 유형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매트릭스 조직 개념을 도입하여 서비스 대상별, 업무과정별 분산된 유형분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가, 전략 기획이 기반이 되고 대도시의 변화와 성격이 반영된 생활안전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설정,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자유로운 자체평가체계에 속한 생활안전 분야 성과평가의 중요성 확대, 생활안전 분야와 관련된 성과평가결과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긍정적 변화 유도, 전반적인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대와 기관장의 관심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생활안전 분야의 성과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유현정(2008)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연구에서 경제사회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관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대수준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개념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정의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권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 현대사회에 있어 안전의 개념은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서 비용과 효용의 효율성을 비교, 수용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개념인 동시에 대상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판단에 의해 안전할 권리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이 비용만 초래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소비자 안전 분야는 각종 제도나 법령에 산재해 있어 소비자 안전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소비자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에 대한 요구 즉,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측정,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안전관리행정기관의 서비스 질을 엄정히 평가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씻고 아울러 대상 기관으로서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안전에 대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마인드를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넷째,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별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2) 생활안전 정책집행에 관한 선행연구

소방조직의 119생활안전대는 정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책요인을 반영하여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게 되었다. 소방조직의 119생활안전대의 출발은 정책의제설정 과정이 정부내부의 주도에 의해 발의, 구체화되어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내부접근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남기범, 2011). 따라서 119생활안전대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안전권 실현에 더욱 접근하려면 소방조직의 생활안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Pressman & Wildavsky(1973)는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한 오클랜드 사업을 분석하여 정책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책의 실패원인으로 첫째, 집행과정에서 참여기관 및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둘째,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의 교체도 집행에 대한 기존의 지지와 협력을 허물어뜨렸다. 특히 집행의 핵심적인 추진집단이나 리더십의 계속이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정책의 내용(design)을 결정할 때 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실현가능한 수단을 마련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적절치 않은 기관이 정책집행을 담당하였다.

Smith(1973)는 이상화된 정책, 정책 대상집단, 집행 담당조직, 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 이상화된 정책은 정책의 형태, 정책의 유형, 정책의 지원정도, 정책의 이미지도 등이고, 둘째, 대상집단은 조직화, 리더십, 과거 경험 등이고, 셋째, 담당조직은 구조화와 인원, 담당업무 및 능력 등이고, 셋째, 환경적 요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요인 등이다.

Edward III(1978)는 커뮤니케이션, 자원, 성향, 관료제의 구조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

하고 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잔달, 명료성, 일관성 등이고, 둘째, 자원은 인적 자원, 정보, 권한, 시설 등이고, 셋째, 성향은 관료제 충원, 유인 등이고, 넷째, 관료제의 구조는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할거성 등이고, 다섯째, 요인 상호간의 관계를 들고 있다.

Sabatier & Mazmanian(1980)은 문제의 용이성,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를 들고 있으며, 첫째, 문제의 용이성은 기술의 난점, 대상집단의 형태, 전체인구에 대한 대상집단의 비율, 요구되는 행태의 변화 등이고, 둘째, 법령의 집행구조화 능력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 적절한 인과이론의 내포, 재원의 초기 할당, 집행기관 내부의 또 상호간의 계층적 통합, 집행기관의 의사결정 규칙, 집행담당자의 충원, 외부인사의 공식적 참여 등이고, 셋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는 사회경제적 요건과 기술, 대중의 지지, 관련단체의 태도와 자원, 지배기관의 지지, 집행담당자의 적극성과 리더십 등이다.

Nakamura & Smallwood(1980)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내용의 명확성, 집행담당 조직의 구조, 관료적 규범, 인적·물적 자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Van Meter & Van Horn(1975)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책기준과 목표, 정책자원, 조직간 의사소통과 추진 활동, 집행기관의 성격,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집행기관의 성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Grindle(1980)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결정 위치, 계획집행자, 확보된 자원, 관련 행위자의 힘, 이익, 전략, 제도 및 체제의 특성, 순응과 반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O'Tool & Montjoy(1984)는 조직 간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조직간 정책집행이 조직 내 정책집행보다 어려우나, 집행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상호의존성의 형태에 따라 집행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조직들의 관계가 공동적 상호의존성(Pooled Interdependence)을 띠는 경우 정책집행 가능성은 조직수의 증가에 비례하지만, 순차적진인 상호의존성(Sequential Interdependence)이나 상호보완적인 상호의존성(Reciprocal Interdependence)일 때 조직의 수가 늘어날수록 집행이 지연되고 실패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주요 학자들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내용은 119생활안전의 활성화 영향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변수선정에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이다.

#### 4.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생활안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국민생활안전 관점, 어린이 생활안전 관점, 소비자 생활안전 관점, 캠퍼스 생활안전 관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생활안전관리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또한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고조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생활안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개념정의, 영역설정에 그쳐 이제야 시작단계이다. 게다가 소방기관에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첫째, 생활안전의 중요성 및 추구가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향후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활안전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효과성이나 만족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행정기관, 즉 소방, 경찰,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간과하고 있다. 소방기관에서 생활민원관련 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소방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방정책추진에 있어 생활안전서비스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가 있다.

셋째,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생활안전서비스가 행정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방기관에서 119생활안전대를 구성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성공적인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소방현장에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19생활안전대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전사고 출동요청 증가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과 신속한 구조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소방행정의 신뢰도 및 만족을 위하여 2010년부터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소방방재청 정책으로 생활안전대는 현재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의 과정에서 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의 수요와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생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를 추출하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조직적, 법·제도적, 인적, 협력적, 기술적 차원에서 생활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안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119생활안전대의 운영 구성요소들을 조직적, 법·제도적, 인적, 협력적, 기술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인 “효과적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119생활안전대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 III. 연구의 조사설계

####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소방조직의 119생활안전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방공무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통해

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지역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우선, 소방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다른 조직의 생활안전서비스, 생활안전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서 119생활안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영역의 주요변수 선정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학자들의 연구내용과 생활안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표 5> 참조). 즉,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생활안전대의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크게 5가지로 조직관리 요인, 법·제도적 요인, 인적요인, 기술적 요인, 협력적 요인 등이다.

<표 5> 변수에 이용된 선행연구

변수	참고자료
조직관리	Pressman & Wildavsky(1984), Sabatier & Mazmanian(1980), Van Meter & Van Horn(1975)
법제도	Grindle(1980), Nakaamura & Smallwood(1980), Sabatier & Mazmanian(1980)
인적	Sabatier & Mazmanian(1980), Grindle(1980), Edward III(1978)
협력	Sabatier & Mazmanian(1980), Smith(1973), O'Tool and Montjoy(1984)
기술	Sabatier & Mazmanian(1980), Nakaamura & Smallwood(1980)

## 2. 조사목적 및 내용

본 조사는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이해 정도,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119생활안전대 효과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영역의 주요변수 선정은 소방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생활안전대의 운영을 위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사영역은 크게 5가지로, 첫째, 최고관리자의 관심과지지, 대응성(신속, 정확) 등 조직적인 요인이다. 둘째, 소방기본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119생활안전대 조직 등 법·제도적 요인이다. 셋째, 생활안전 관련 교육, 생활안전 관련 훈련, 119생활안전대 인사 배치, 생활안전 관련 의사소통 등 인적 요인이다. 넷째, 생활안전 전문성, 생활안전 활동정보시스템, 119생활안전대 차량, 119생활안전대 장비 등 기술적 요인이다. 다섯째, 시민의지지, 유관기관 네트워크, 안전문화 조성, 홍보 등 협력적 요인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은 첫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설문으로 최근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소방서비스를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에 대한 내용, 생활안전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때에 다른 기관보다 발 빠르게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 소방조직에서 119생활안전대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둘째, 조직 관리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출동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셋째, 법·제도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에 관한 근거 법규를 “소방기본법”에 두는 내용, 119생활안전대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 별도의 “119생활안전대” 조직을 두는 것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넷째, 인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된 교육 경험,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된 훈련 경험, 119생활안전대 출동지령 시 출동벨 구분 필요, 119생활안전대에 대한 의견 수렴 정도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다섯째, 협력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가 출동할 때 시민들의 차량 양보,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구축,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지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여섯째, 기술적 요인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숙련된 기술 보유, 119생활안전대 활동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119생활안전대 차량의 적절성, 119생활안전대 장비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일곱째, 소방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를 제고,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 119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 3.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소방현장에서 활동하고,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1,000명이며, 표본추출 방법을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무작위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안전서비스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119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위주의 소방공무원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표준화된 질문지 즉, 질문항목, 질문형식, 질문항목의 배열순서 등 세심하게 규정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항목의 내용은

의견이나 태도는 그 내용, 방향(대상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의 감정의 표현) 그리고 강도로 표시되며, 응답자의 성향을 나타내 주는 의견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내용(opinion and attitude questions)이다. 질문형식은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견해와 가장 비슷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세트의 질문이 제시되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양식(question format)은 응답자들이 어떤 태도나 대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좋아하는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 되는 서열식(ranking) 질문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서를 전달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게 한 다음 나중에 질문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배포조사법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방법은 공무원 등 조사대상이 한정된 집단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질문서의 적용방법이다(The Operating Situ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2013).

####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3년 6월 말에 실시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지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통해 측정지표를 확정하고 연구의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총 1,000부를 배포하여 총 921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92부를 제외한 829부를 유효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도구인 설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관성을 검토하는 대표적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 값을 이용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자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평균값 분석을 통해 전체 항목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한다.

셋째,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관계정도를 파악하여 대략적인 회귀계수( $\beta$ ) 값을 예측하고, 독립변수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를 검증한다.

넷째,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대한 주요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관계와 방향을 파악한다.

#### 5. 평가척도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엄밀성을 말하는 것으로 신뢰도 분석이란 측정된 변수

들의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할 때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적일관성을 검증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 검정을 이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어 모든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기로 하였다<표 6>은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 결과를 나타낸 값이다.

Cronbach's  $\alpha$  검사는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측정척도로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값은 0.0에서 1.0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뢰도 계수가 0.7미만이면 하나의 동일개념(또는 인정됨)으로 볼 수 없다고 하기도 하며, 탐색적 조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보통 0.8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한다(우수명, 2010: 361).

본 연구의 경우<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Cronbach's  $\alpha$ 값이 0.936로 나타나,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에서 요구하는 0.70을 넘었기 때문에 다항목적도의 내적일관성이 유지되는 신뢰성 있는 도구로 인정할 수 있다.

<표 6> 주요 변수의 신뢰성 분석

변수	항목	Cronbach's $\alpha$
조직관리	4	0.862
법제도	4	0.911
인적	4	0.684
기술	4	0.841
협력	4	0.796
생활안전대 운영	3	0.929
전체변수	23	0.936

측정의 타당도란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타당성 중 구성개념 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요인분석 결과 KMO척도 측도는 0.908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 구성형 검증에서 유의확률 0000으로 01%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구분이 가능한 변수로 6개가 도출되었는데 요인1은 생활안전, 요인2는 법·제도적 요인, 요인3은 조직 관리적 요인, 요인4는 협력적 요인, 요인5는 인적 요인, 요인6은 기술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표 7>참조).

<표 7> 요인분석

요인 성분	성분 1	성분 2	성분 3	성분 4	성분 5	성분 6	변수명
생활안전확대	.800	.204	.199	.068	.096	.101	생활안전
생활안전추진	.818	.276	.242	.052	.119	.083	
생활안전운영	.794	.295	.272	.061	.080	.105	
처리규정	.321	.830	.164	.069	.022	.082	법제도
업무매뉴얼	.301	.790	.155	.039	.001	.163	
설치기준	.354	.785	.182	.140	.082	-.017	
소방기본법	.367	.777	.210	.054	.117	-.005	
대응성	.226	.189	.770	.171	.060	.183	조직
신속성	.135	.264	.743	.149	.077	.126	
기관장관심	.371	.136	.712	.141	.155	.082	
기관장리더십	.415	.135	.690	.149	.180	.098	
차량양보	.307	.095	-.086	.500	.335	.281	협력
유관기관비상	.104	.075	.297	.848	.125	.151	
유관기관협정	.116	.108	.246	.840	.154	.212	
교육	.099	.068	.156	.169	.890	.090	인적
훈련	.133	.051	.147	.149	.885	.168	
차량적절성	.142	.072	.197	.193	.124	.868	기술
장비적절성	.170	.080	.167	.237	.165	.846	

KMO(Kasier-Meyer-Olkin)측도= .908 Bartlett=13763.207 p=0.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si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7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 IV. 연구의 결과분석

##### 1. 인구사회학적 배경 결과분석

분석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표 7> 참조).

<표 7>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내용	분류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① 남자	783	94.5
	② 여자	46	5.5
	합계	829	100.0
나이	① 20대	43	5.2
	② 30대	364	43.9
	③ 40대	230	38.6
	④ 50대 이상	102	12.3
재직기간	① 5년 미만	119	14.4
	② 5-10년 미만	267	32.2
	③ 10-15년 미만	109	13.1
	④ 15-20년 미만	191	23.0
	⑤ 20년 이상	143	17.2
계급	① 소방사	123	14.8
	② 소방교	249	30.0
	③ 소방장	285	34.4
	④ 소방위	130	15.7
	⑤ 소방경 이상	42	5.1
학력	① 고졸 이하	238	28.7
	② 전문대졸	307	37.0
	③ 4년제 졸	274	33.1
	④ 대학원 졸 이상	10	1.2
직무	① 내근	157	18.9
	② 소방(경방)	250	30.2
	③ 운전	266	32.1
	④ 구급	113	13.6
	⑤ 구조	43	5.2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783(94.5%)으로 여자 46명(5.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소방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주 담당자가 남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양성평등 고용정책에 의해서 여성 진압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응급의료의 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급대에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소방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64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가 230명(38.6%)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직기간은 5-10년 미만이 267명(32.2%)으로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15-20년 미만이 191명(23.0%)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소방장이 285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방교가 249명(30.0%), 소방위가 130명(15.7%), 소방사가 123명(14.8%), 소방경 이상이 42명(5.1%)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별 분포는 운전이 266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방(경방)이 250명(30.2%), 내근(행정)이 157명(18.9%), 구급대원이 113명(13.6%), 구조대원이 43명(5.2%)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2. 응답분포 결과분석

### 1)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효과

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소방조직의 효과성 즉, 소방이미지, 생활안전 시민수혜, 소방정책 추진 등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61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240명(29.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25로 119 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 제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79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246명(29.7%)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36로 시민수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 할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89명(3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196명(23.6%)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09로 119 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 할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안전대 운영 관련 추가 업무로 인해 현업부서 요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지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소방정책에 대한 분석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소방이미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7	11.7	3.25	1.203
	② 그렇지 않다	101	12.2		
	③ 보통이다	261	31.5		
	④ 그렇다	240	29.0		
	⑤ 매우 그렇다	130	15.7		
생활안전 시민수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5	9.0	3.36	1.152
	② 그렇지 않다	85	10.3		
	③ 보통이다	279	33.7		
	④ 그렇다	246	29.7		
	⑤ 매우 그렇다	144	17.4		
소방정책 추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8	13.0	3.09	1.199
	② 그렇지 않다	125	15.1		
	③ 보통이다	289	34.9		
	④ 그렇다	196	23.6		
	⑤ 매우 그렇다	111	13.4		

### 2) 조직 관리적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조직 관리적 요인, 즉 기관장의 관심, 기관장의 리더십, 대응성, 신속성, 수당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응답분포 조사를 시행하였다(<표 9>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3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62명(3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34로 119생활안전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12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6명(28.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28로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장의 경우 조직의 가치와 안전을 중시하는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58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9명(2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23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이 시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출동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3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04명(24.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52로 119생활안전대 운영이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조직의 경우 화재·구조·구급 등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 업무의 특성이 생활안전업무에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9> 생활안전대 조직관리적 요인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기관장 관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1	8.6	3.34	1.109
	② 그렇지 않다	81	9.8		
	③ 보통이다	293	35.3		
	④ 그렇다	262	31.6		
	⑤ 매우 그렇다	122	14.7		
기관장 리더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5	9.0	3.28	1.114
	② 그렇지 않다	90	10.9		
	③ 보통이다	312	37.6		
	④ 그렇다	236	28.5		
	⑤ 매우 그렇다	116	14.0		

&lt;표 9&gt; 생활안전대 조직관리적 요인(계속)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생활안전 대응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82	9.9	3.23	1.174
	② 그렇지 않다	127	15.3		
	③ 보통이다	258	31.1		
	④ 그렇다	239	28.8		
	⑤ 매우 그렇다	123	14.8		
생활안전 신속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63	7.6	3.52	1.165
	② 그렇지 않다	92	11.1		
	③ 보통이다	204	24.6		
	④ 그렇다	293	35.3		
	⑤ 매우 그렇다	177	21.4		

### 3) 법·제도적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119생활안전대의 법·제도적 요인, 즉 소방기본법, 설치기준, 운영규정, 별도조직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의 활동근거를 소방기본법에 두어야 한다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255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86명(22.4%)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33으로 소방기본법에 활동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의 설치 기준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258명(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01명(24.2%)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47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의 보완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가 292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24명(27.0%)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63으로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법적으로 생활안전대의 활동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 업무범위를 혼동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하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완된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19생활안전대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188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85명(22.3%)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96로 119생활안전대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가 된다는 인식과 이와 관련된 조직의 확대 및 업무의 과중화에 대한 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0> 119생활안전대 법·제도적 요인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소방기본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8	13.0	3.33	1.296
	② 그렇지 않다	108	13.0		
	③ 보통이다	186	22.4		
	④ 그렇다	255	30.8		
	⑤ 매우 그렇다	172	20.7		
소방력 기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3	11.2	3.47	1.273
	② 그렇지 않다	88	10.6		
	③ 보통이다	189	22.8		
	④ 그렇다	258	31.1		
	⑤ 매우 그렇다	201	24.2		
운영규정 보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9	9.5	3.63	1.224
	② 그렇지 않다	62	7.5		
	③ 보통이다	172	20.7		
	④ 그렇다	292	35.2		
	⑤ 매우 그렇다	224	27.0		
생활안전대 별도조직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85	22.3	2.96	1.423
	② 그렇지 않다	151	18.2		
	③ 보통이다	155	18.7		
	④ 그렇다	188	22.7		
	⑤ 매우 그렇다	150	18.1		

#### 4) 인적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119생활안전대의 인적 요인, 즉 교육, 훈련, 출동벨, 의사소통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련한 교육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가 247명(2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0명(27.7%)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36로 전반적으로 생활안전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련한 훈련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가 309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58명(31.1%)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13로 생활안전 업무와 관련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출동지령 시 출동벨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292명(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92(23.2%)로 나타났다. 평균은 3.40으로 출동벨 구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출동 중에서 생활안전사고 출동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출동벨 구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의견수렴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66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208명(25.1%)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55로 119생활안전대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

방조직의 계급적·조직문화의 특성상 상호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1> 119생활안전대 인적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생활안전 교육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30	27.7	2.36	1.143
	② 그렇지 않다	247	29.8		
	③ 보통이다	209	25.2		
	④ 그렇다	107	12.9		
	⑤ 매우 그렇다	36	4.3		
생활안전 훈련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58	31.1	2.13	1.020
	② 그렇지 않다	309	37.3		
	③ 보통이다	180	21.7		
	④ 그렇다	60	7.2		
	⑤ 매우 그렇다	22	2.7		
생활안전의 출동벨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91	11.0	3.40	1.230
	② 그렇지 않다	95	11.5		
	③ 보통이다	192	23.2		
	④ 그렇다	292	35.2		
	⑤ 매우 그렇다	159	19.2		
생활안전 의사소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47	17.7	2.55	.992
	② 그렇지 않다	208	25.1		
	③ 보통이다	366	44.1		
	④ 그렇다	83	10.0		
	⑤ 매우 그렇다	25	3.0		

## 5) 기술적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기술적 요인 즉, 전문성, 정보시스템, 차량의 적절성, 장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숙련된 기술 보유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52명(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174명(21.0%)으로 타났다. 평균은 2.74로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이 미비해 전문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42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237명(28.6%)으로 타났다. 평균은 2.54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관리 및 생활안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호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차량이 활동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13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237명(28.6%)으로 타났다. 평균은 2.52로 119생활안전대 차량이 활동에 적절한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의 경우 개인에

따른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활동지역 및 지역에 따른 활동업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역 및 주 업무에 따른 생활안전 차량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19생활안전대의 장비가 활동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27명(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257명(31.0%)으로 타났다. 평균은 2.35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19생활안전대의 장비가 생활안전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적절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에 맞는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2> 119생활안전대 기술적 요인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생활안전 전문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27	15.3	2.74	1.050
	② 그렇지 않다	174	21.0		
	③ 보통이다	352	42.5		
	④ 그렇다	139	16.8		
	⑤ 매우 그렇다	37	4.5		
생활안전 정보시스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40	16.9	2.54	.984
	② 그렇지 않다	237	28.6		
	③ 보통이다	342	41.3		
	④ 그렇다	86	10.4		
	⑤ 매우 그렇다	24	2.9		
생활안전 차량 적절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56	18.8	2.52	1.029
	② 그렇지 않다	237	28.6		
	③ 보통이다	313	37.8		
	④ 그렇다	95	11.5		
	⑤ 매우 그렇다	28	3.4		
생활안전 장비 적절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80	21.7	2.35	.950
	② 그렇지 않다	257	31.0		
	③ 보통이다	327	39.4		
	④ 그렇다	48	5.8		
	⑤ 매우 그렇다	17	2.1		

6) 협력적 요인에 대한 빈도 분석

생활안전대 운영에 있어 협력요인 즉, 차량양보, 유관기관 협정, 안전문화 조성, 생활안전대 시민인지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가 출동할 때 시민들의 차량양보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68명(32.2%), ‘그렇지 않다’가 268명(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0명(27.7%)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21로 119생활안전대가 출동할 때 시민들의 차량양보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이는 정확한 차량 양보방법을 알지 못해 허둥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소수의 시민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일반화되어 전체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구축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79명(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가 213명(25.7%)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70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 구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및 응원협정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비관련부서간의 내부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312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260명(31.4%)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43으로 119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가 332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26명(27.3%)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16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인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119생활안전대 협력적 요인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차량양보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30	27.7	2.21	.969
	② 그렇지 않다	268	32.3		
	③ 보통이다	268	32.3		
	④ 그렇다	50	6.0		
	⑤ 매우 그렇다	13	1.6		
유관기관 응원협정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0	12.1	2.70	.956
	② 그렇지 않다	213	25.7		
	③ 보통이다	379	45.7		
	④ 그렇다	110	13.3		
	⑤ 매우 그렇다	27	3.3		
안전문화 구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63	19.7	2.43	.989
	② 그렇지 않다	260	31.4		
	③ 보통이다	312	37.6		
	④ 그렇다	71	8.6		
	⑤ 매우 그렇다	23	2.8		
생활안전대 시민인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217	26.2	2.16	.934
	② 그렇지 않다	332	40.0		
	③ 보통이다	226	27.3		
	④ 그렇다	37	4.5		
	⑤ 매우 그렇다	17	2.1		

### 3. 생활안전대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 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r값과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유의미하다고 해석 할 수 있고 방향성도 대부분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1 이나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며,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14> 참조),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와 소방조직 효과성의 상관관계가 0.7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 요인과 소방조직 효과성의 상관관계가 0.677, 법·제도적 요인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의 상관관계가 0.649, 협력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상관관계가 0.622, 조직적 요인과 생활안전대 운영의 상관관계가 0.599, 조직적 요인과 소방조직 효과성의 상관관계가 0.595순으로 나타났다. 이해 반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로는 법·제도적 요인과 인적요인의 상관관계가 0.213, 인적요인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의 상관관계가 0.290, 인적요인과 소방조직 효과성의 상관관계가 0.300 등이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0.8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0.9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회귀계수의 분산이 급속히 커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이창길, 2011).

<표 14>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변수	V1	V2	V3	V4	V5	V6
조직(V1)	1					
법제도(V2)	.561(**)	1				
인적(V3)	.543(**)	.523(**)	1			
기술(V4)	.552(**)	.372(**)	.620(**)	1		
협력(V5)	.503(**)	.386(**)	.624(**)	.710(**)	1	
생활안전(V6)	.599(**)	.697(**)	.500(**)	.450(**)	.427(**)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2)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는 5개의 독립변수와 관계의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sup>2</sup>)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데, <표

15>에서 R2=0.561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56.1%를 설명해 주고 있다. 수정된 R2값은 조정된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수정된 R2=0.558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법·제도적 요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직 관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순으로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요인과 협력적 요인은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참조).

<표 15> 생활안전대의 활성화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480	.118		-4.081	.000		
조직 관리	.296	.040	.233	7.351	.000	.533	1.876
법·제도	.540	.032	.502	17.040	.000	.615	1.626
인적	.057	.052	.037	1.099	.272	.467	2.142
기술	.137	.053	.093	2.592	.010	.417	2.395
협력	.043	.056	.027	.766	.444	.437	2.289
R <sup>2</sup> =.561 수정된R <sup>2</sup> =.558 F = 210.086 유의확률=.000 Durbin-Watson=1.975							

※ 종속변수: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본 연구에서는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제도적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직 관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19생활안전대 시행에 있어 정책수립과정과 집행과정이 여론수렴,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벤트성 정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정책집행 불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에 생활안전대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119생활안전대 차량의 배치기준과 119생활안전대의 인력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제도적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조직 목표를 생활안전으로 확장에 있어 조직 관리적 인차원에서 혁신이 조직문화를 통해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 최고관리자는 혁신을 통해 조직의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혁신의 채택 및 혁신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용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량과 장비에 대해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소방조직은 화재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방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현대조직은 급격한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생존·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전략 모색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변수들 중 법·제도적 요인, 조직 관리적 요인, 기술적 요인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조직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과 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첫째, 생활안전 업무는 사회적 안전수요를 반영한 소방조직 내 새로운 정책목표의 혁신으로 볼 수 있다. 조직 내 혁신은 혁신에 대하여 인지하고 평가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채택단위에게 전달되고 채택단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박용치, 1983). 조직 내 혁신 결정은 지식-설득-결정-전달-행동의 단계를 거친다(Rogers & Shoemaker 1971). 그러나 소방조직 목표 혁신에 있어 조직혁신 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소방정책을 추진하여 일선관료의 저항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이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생활안전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소방조직의 혁신이 정책집행에 앞서 혁신확산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소방조직의 119생활안전서비스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어야 한다. 개인소득수준의 향상과 근로시간의 단축 등으로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산 시설물과 함께 제공되면서 새로운 안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2009년도 소비자 안전사고 사례 39,171건 중에서 시설물과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7,175건으로 전체의 18.3%이다. 대부분인 6,030건이 구조물 건축물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다(유현정 외, 2011). 또한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도 평균46.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생활안전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안전사고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활안전 비용의 지불능력이 없는 개별 주체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는 사회전체에 큰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 소방조직에서는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생

활안전대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화재, 구조·구급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위험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서비스가 소방의 제4세대 업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소방조직은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어 화재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1983년 12월 31일에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하였다. 또한 1988년 8월 1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복잡한 사회구조만큼이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고도로 훈련된 구조대를 설치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방조직은 화재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방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제1세대 화재, 제2세대 구급, 제3세대 구조, 제4세대 생활안전으로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안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4세대 업무로서의 생활안전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관기관 협력관계의 구축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생활안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나 시민의 관심은 새로운 문제에 쏠리기 쉬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래된 정책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소방정책의 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정책의 집행자는 시민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려줌으로서 예산, 기술 등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서비스는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소방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민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채진·우성천, 2009).

또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관기관은 응원협정을 통해 다조직간의 협력이 중요하다(채진, 2012). 협력의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11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상호 응원협정이 있다. 유관기관 응원협정은 각종 생활안전사고 발생시 상호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응원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관기관 응원 요청 및 지원 사항은 각종 생활안전사고 현장에서 다조직간의 협력활동이다.

다섯째, 소방정책의 집행에 앞서 생활안전에 의제설정, 집행수단 선택 등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는 국민 생활안전 관점, 어린이 생활안전 관점, 소비자 생활안전 관점, 캠퍼스 생활안전 관점 등 생활안전의 개념적 연구에 그쳤다. 소방조직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생활안전사고 출동요청 증가에 따른 효율적 조직운영과 신속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3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소방조직에서 생활안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활안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의제설정과 정책집행수단 선택 등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 생활안전 정책집행에 혼란을 가중하였다.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조직에서는 다양한 생활안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한정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생활안전대 내부적 요인, 즉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외부적 요인인 시민의 만족도와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생활안전대의 운영의 역사가 일천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향후 생활안전대의 운영에 있어 내부적 요인 소방공무원과 외부적 요인 시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기태근. 2010. 위험사회와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1(1): 3-31.
- 남기범. 2011. 현대정책학개론. 서울: 조명문화사.
- 박용치. 1983. 혁신의 확산과정: 다수확신품종 확산과정의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석윤. 2003.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집 8(1): 1-32.
- 유현정, 최은실, 김성숙, 이재은. 2011. 소비자와 생활안전. 서울: 대영문화사.
- 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4(2): 17-31.
- 이재은, 유현정. 2007. 국가위기관리의 새로운 영역 설정과 추진 전략: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와 운영 방안 모색. 한국위기관리논집. 3(2): 1-17.
- 이창길. 2011. 생활안전 분야의 표준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23-42.
- 채진. 2012. 소방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영향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8(1): 39-56.
- 채진. 2012. 다조직의 재난관리 협력체계 분석: 구제역방역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1): 57-78.
- 채진, 우성천. 2009.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3(4): 79-90.
- Douglas A. Wiegmann, Terry L. von Thaden, Alyssa A. Mitchell, Gunjan Sharma, and Hui Zhang. 2003.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Safety Culture Survey for Commercial Avi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echnical City International Airport*. N.J.: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Edward III, George C. 1980. *Implementing Public Policy*.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Grindle, Merille S. 1980. *Politic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Third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akamura, Robert T. & Frank Smallwood.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O'Tool, Jr. L. and R. Montjoy. 1984. Intergovernmental Policy Implementation: A Theoretical Perspectiv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6): 491-503.
- Pressman, Jeffrey I. and A. Wildavsky.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gers, E. M. with F.F. Shoemaker. 1971.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Free Press
- Sabatier, Paul P. 1986.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Journal of public Policy*. 6(1): 21-48.
- Sabatier, Paul & Daniel Mazmanian. 1980. Policy Implementation: A Framework of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8(4): 538-560.
- Smith, Thomas B. 1973.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s*. 4(2): 197-209.
- The Operating Situ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2013. *Gyeonggi-Do Fire Disaster Headquarters of Internal Data*. The Operating Situation of 119 Life Safety Party.
- Ulrich Beck. 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Van Meter, Donald S. & Carl E. Van Horn. 1975.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445-488.

---

**채진:** 현직소방공무원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소방행정에 있어 재난관리효과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009), 현재 경기도소방학교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와 산업정보대학원에서 소방학과 재난관리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관리학회 섭외이사, 한국정책개발학회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교육취업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저널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 관심분야는 재난관리, 소방행정, 안전문화 등이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4), 소방공무원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2012), 소방조직의 지식관리시스템 영향요인 분석(2012),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연구(2011), 소방공무원의 내부청렴도에 관한 질적연구(2011) 유비쿼터스 119시스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11), 등이 있다 (korea119@gg.go.kr).